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8. 18 선고 2021가단21763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, 담당변호사 김석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21.

판 결 선 고 2022. 8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부산광역시 기장군 C 대 19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10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위 (나) 부분 5㎡ 토지를 인도하라.
2.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C 대 19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 186㎡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본인 소유의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(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의 위치는 별지 참고도 참조).

다. 피고의 주택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바, 위 주택이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다[이하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10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㎡를 ‘이 사건 침범 부분’이라 한다]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(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피고는 D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위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.

피고는,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,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행남

별지